

(유권해석) 새마을도로의 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.

[국토부 2013. 09. 09. 토지정책과-5538]

질의요지

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의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?

회신내용

「토지보상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1항 … 규정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으로, 일반적으로 새마을사업은 1970년대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,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및 미불용지 평가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경위·주체 및 도로개설에 따른 편익의 귀속주체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